

# 긴급입찰공고 사유서

## 1. 용역요지

- 가. 용역명 : 이라크 카르발라(Karbala) 300MW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 예비타당성조사
- 나. 용역기간 : 계약일로부터 140일간 (2019. 12. 16. 한)
- 다. 사업예산 : 금420백만원

## 2. 긴급입찰공고 사유

### 가. 사업의 성격

- 본 용역은 해외건설촉진법 제15조의4 및 국토부훈령 제1151호 제8조제4항에 의거, 우리기업의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 수행하는 용역임
- 본 용역의 대상사업은 이라크 내 불안정한 전력공급 및 증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고자 이라크 전력부(MOE)에서 시행하는 입찰형 민간투자사업으로, 카르발라 주에 300MW 태양광 발전소 건설 후 20년간 운영하는 BOO사업임
- 이에 따라 이라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IPP 사업에 경험이 있는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EOI 제출을 요청('19.4)하였고, 역량 있는 우리 기업들도 한국전소시업을 구성하여 본 입찰의 참여를 준비 중
- 따라서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기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조달 방안, 계약서(안), 현지 법률 및 제도 검토 등을 통한 재무 및 법률 타당성 분석을 시행하여 우리 기업의 입찰 참여 시 수주를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코자 함

### 나. 긴급입찰 사유

- 본 사업은 이라크 정부의 입찰형 사업으로, '19.6월 입찰참여자의 EOI 제출 이후 '19년 말 사업수행자 선정까지 빠른 일정으로 추진될 예정임.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참여 및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조속한 사업검토가 필요한바, 긴급입찰공고를 통한 적기 자료 활용이 필요
- \* '19.6 EOI 제출, '19.8 RFP 발급, '19.10 제안서 제출, '19.12 낙찰자 선정
- 정상적으로 "협상에 의한 계약"을 추진할 경우(공고기간 40일) 최종 자료 작성을 위한 기간이 부족하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여 공고기간 단축 필요